

「2011년도 USTR TBT 보고서」의 한국 관련 내용 분석 및 시사점

장용준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부연구위원 (yjjang@kiep.go.kr, Tel: 3460-1065)

서정민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부연구위원 (jmsuh@kiep.go.kr, Tel: 3460-1186)

김민성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전문연구원 (mskim411@kiep.go.kr, Tel: 3460-1113)

양주영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전문연구원 (jyyang@kiep.go.kr, Tel: 3460-1052)

차 례 ● ● ●

1. 서론
2. 최근 TBT 동향
3. 「2011년도 USTR TBT 보고서」의 한국 관련 주요 내용 및 평가
4. 정책적 시사점

주요 내용 ● ● ●

- ▶ 2009년 이후 미국은 여러 비관세조치 중 특히 TBT와 SPS 현안에 큰 관심을 보여 왔음.
 - 론 커크 USTR 대표는 TBT와 SPS에 대한 감시와 보고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힘.
- ▶ 2011년도 USTR의 TBT 보고서는 「2011년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및 「2011년도 SPS 보고서」와 함께 3월 30일에 발간됨.
 - 이 보고서는 미 업계의 의견과 협상 진행상황을 중심으로 18개 주요 교역국의 TBT에 대하여 평가함.
 - 우리나라의 경우 총 5건(적합성 평가 관련 규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유기농식품 인증제도,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박막태양전지 모듈)이 기록되고 있음.
 - TBT 관련 한-미 간 특정무역현안 건수 비중은 다른 교역상대국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 우리나라의 '적합성 평가 관련 규제',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의 경우 미국 측 요구를 대체로 수용하였음.
 - 이 경우 우리나라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의 지속적 증가와 미국의 기술수준을 감안할 때, 향후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적·환경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 '유기농식품 인증제도',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박막태양전지 모듈'에 관한 문제제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이 경우 환경과 인체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며, 주요 도입국들의 제도변화와 대응논리를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우리 정부는 1) TBT 관련 대외전담 부서 설립, 2) 선제적인 TBT 대응전략 마련, 3) 국내 기술규제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TBT 관련 현안에 대하여 일관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대내적으로 국내 기술규제제도가 개선되어야 하며, 대외적으로 TBT 대응전담 부서가 필요함.
 - 보다 선제적인 TBT 대응을 위해 외국기술규제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함.

1. 서론

- 최근 미국정부는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간 환율문제 해결과 더불어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철폐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1990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전년도 대비 약 12% 증가한 4,702억 달러에 달함.¹⁾
 - 2011년에는 세계경제 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은 주로 수출증대를 통해 자국의 경제회복을 도모하고자 함.
 - 특히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정부는 수출증진에 주요국의 비관세조치 철폐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힘.²⁾
- 2009년 이후부터 미국은 여러 비관세조치 중 특히 무역상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과 동식물 위생·검역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현안에 큰 관심을 보여 왔음.
 - 론 커크 USTR 대표는 2009년 7월 16일 피츠버그 제철소 연설에서 외국의 TBT와 SPS에 대한 감시와 보고 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힘.
 - 이에 따라 매년 3월 말 미 의회에 제출되는 USTR의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s on Foreign Trade Barriers)」에서 TBT와 SPS 관련 내용은 2010년부터 따로 제출됨.
 - NTE는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81조에 의거하여 USTR이 주요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미 업계의 의견을 취합하여 매년 3월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임.
 - 또한 자국 기술규제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1월에 ‘신기술규제전략’을 마련하였으며,³⁾ 이를 계기로 외국의 TBT에 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
- 2011년도 USTR의 TBT 보고서는 「2011년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및 「2011년도 SPS 보고서」와 함께 3월 30일에 발간됨.
 - 이 보고서는 미 업계의 의견과 협상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18개 주요 교역국의 TBT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 18개 주요 교역국 중 브라질이 총 8건으로 가장 많은 수의 TBT가 보고되고 있으며, 그 뒤로 EU가 총 7건을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 TBT의 경우 중국, 터키와 동일하게 총 5건이 기록되어 건수만 보았을 경우 비교적 많은 수가 보고되고 있음.
- 우리나라 교역에서 미국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최근 미국정부의 TBT 관련 조치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1) 미국 BEA(Bureau of Economic Analysis)(2011. 3. 16), *U.S. Current Account Deficit Increases in 2010*.

2) 「Trade Enforcement of 2009(HR496)」.

3) 미국 백악관(2011. 1. 18), *Fact Sheet: The President's Regulatory Strategy*.

- 지난해 한·미 간 교역규모는 약 900억 달러로 우리나라에 미국은 중국, 일본, EU에 이어 4번째 교역국이며, 미국에 우리나라는 7번째 교역국임.
- TBT와 관련된 WTO 내 현안제기에서도 한·미 간의 현안 건수가 다른 교역상대국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⁴⁾

■ 본 보고서는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의 TBT 동향과 함께 USTR이 발표한 「2011년도 TBT 보고서」의 한국 관련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최근 TBT 동향

■ 1995년 1월에 발효된 WTO/TBT 협정문에 의해 WTO 회원국들은 신규로 기술규제를 도입하거나 기존 규제를 개정할 경우, 이를 WTO/TBT 위원회에 통보할 의무를 가짐.

- TBT 통보문은 기술규제의 입안 국가, 목적, 통보날짜, 품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주요국의 기술규제 동향 및 특징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됨.

■ 기술규제가 교역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교역상대국은 WTO/TBT 정례회의⁵⁾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이라고 함.

- TBT 통보문에는 기술규제에 대한 단순한 정보만을 담고 있을 뿐 실제로 무역 상대국의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
- 따라서 특정무역현안을 통해 기술규제가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가. TBT 통보문 동향

■ TBT 통보문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총 12,935건의 기술규제가 신규 제정 또는 개정되었음.⁶⁾

- TBT 통보문의 수는 2005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09년에는 최고치인 1,490건을 기록하였고, 2010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한 1,420건을 기록하였음.
 - 2010년의 TBT 통보문 감소는 주로 중국의 통보건수 감소에 의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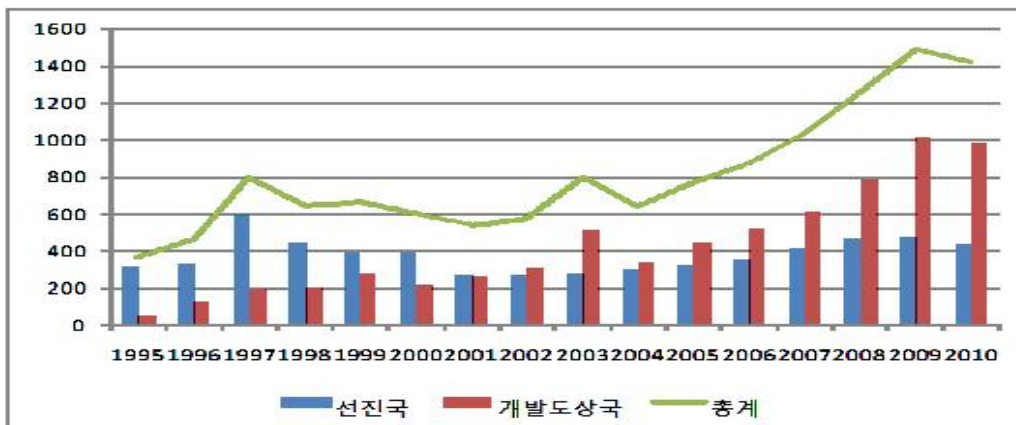
4) WTO(2011), *Specific Trade Concerns Raised in the TBT Committee*.

5) WTO/TBT 위원회 정례회의는 매년 3회(3월, 6월, 11월)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개최됨.

6) 2010년의 수치는 WTO 보고서인 G/TBT/29, Annex D에서의 건수들을 저자가 계산한 것임.

- 중국의 경우 2001년 WTO 가입 이후 계속 추진되었던 WTO/TBT 협정이행을 위한 기술규제 제·개정 작업이 2010년도에 들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됨.
- 2010년에는 우간다가 이례적으로 135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였고, 미국(96건), 이스라엘(95건), 사우디아라비아(90건)가 그 뒤를 잇고 있음.
-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들의 높은 통보건수는 주로 국제표준 부합화에 따른 결과로 조사됨.⁷⁾

그림 1. 연도별 TBT 통보문 건수(1995~2010년)



주: 선진국 분류는 IMF가 채택하고 있는 분류 기준을 따르고, 여기에 EU를 추가하였음.

자료: WTO,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각 연도별.

■ 미국은 1995년 이후 총 803건의 기술규제를 WTO에 통보하여 중국 다음으로 통보건수가 많음.

- 2010년 미국의 통보건수는 WTO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96건으로, 최근까지도 기술규제 신설 및 개정에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대부분 선진국들의 통보건수가 2002년부터 최근까지 개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한 데 반해, 미국은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95년 이후 총 393건의 기술규제를 통보하였고, 최근 5년간 통보건수는 201건으로 10위를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기술규제 통보건수는 2006년 이후 증가세를 보여 2010년에는 45건을 기록하였고, 2006년부터 2010년간의 통보건수가 총 통보건수의 51%를 차지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우리나라 또한 최근 들어 기술규제 신규 제정 및 개정에 활발한 활동을 해왔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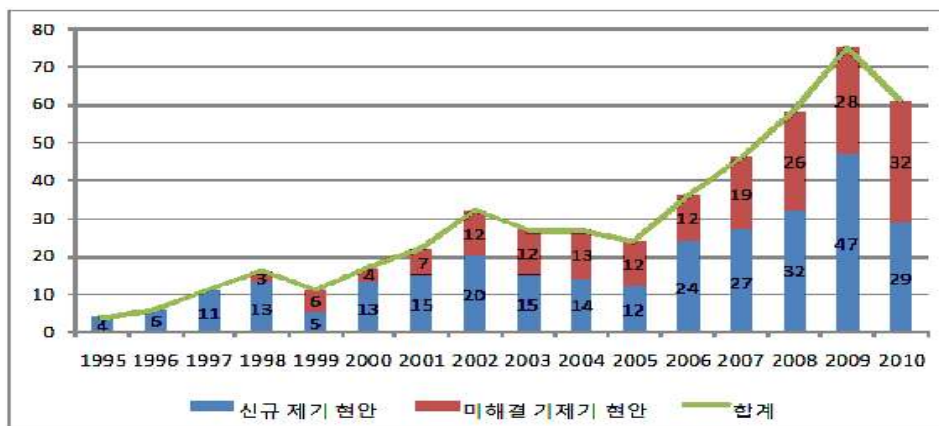
나. 특정무역현안(STC) 동향

■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논의된 특정무역현안은 총 287건이며 2010년 한 해의 경우 61건에 달함.

7) TBT 종합정보포털, 「2010년 WTO/TBT 통보문 통계 보고서」.

- [그림 2]에 따르면 특정무역현안 건수는 2005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74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전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이 눈에 띄게 감소했던 1998년, 2002년, 2008년에 특정무역현안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 시 각국이 기술규제를 보호무역의 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또한 2007년 이후로는 신규로 제기된 현안뿐만 아니라 기존 회의에서 해결되지 못한 현안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음.
- 1995년 이후 특정무역현안이 가장 많이 제기된 국가는 EU로 63건을 기록하고 있고, 중국과 미국이 34건, 한국 21건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 연도별 특정무역현안(STC) 건수(1995~2010년)



자료: WTO(2011), Specific Trade Concerns Raised in the TBT Committee.

- 미국이 제기한 특정무역현안은 총 113건으로 미국이 제기당한 특정무역현안 건수(총 34건)를 크게 상회함.
 - 미국이 특정무역현안을 가장 많이 제기한 국가는 EU로 32건을 기록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 제기한 건이 16건, 한국에 대한 경우 10건을 기록함.
 - 미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을 가장 많이 제기한 국가는 중국(14건)과 EU(13건)이고, 한국의 경우 총 4건임.
- 우리나라가 제기한 특정무역현안은 총 28건이고 우리나라가 제기당한 현안은 총 20건임.
 - 우리나라가 특정무역현안을 제기한 국가는 EU 8건, 중국 5건, 미국 4건 순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을 제기한 국가는 EU 12건, 미국 10건, 일본 5건 순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TBT 관련 특정무역현안에서 한·미 간의 현안 건수 비중이 다른 교역상대국 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에 제기한 특정무역현안 건수(4건)보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기한 건수(10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특정무역현안의 한국 관련 내용은 「2011년도 TBT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잘 서술되어 있음.

3. 「2011년도 USTR TBT 보고서」의 한국 관련 주요 내용 및 평가

- 2011년도 USTR의 TBT 보고서에서 한국 관련된 현안은 주제 또는 항목에 따라 1) 적합성 평가, 2)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3) 유기농식품 인증제도, 4)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5) 박막태양전지모듈로 나눌 수 있음.

가. 적합성 평가 관련 규제

- 2008년 12월 한국은 현재 시행 중인 '차량안전확인공산품 안전기준'에 리튬이온전지에 대한 안전기준 항목을 신설함.⁸⁾
 - 이 기술규제는 휴대기기에 사용되는 리튬2차 단전지 및 이들로 조립된 전지의 안전요건, 시험방법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미국은 이 규제와 관련하여 외국소재 시험기관도 적합성 평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⁹⁾ 2009년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 소재 기관에 한해 이를 허용함.
- 또한 2010년에는 냉장고의 에너지 효율성 검사에 대한 미국·일본 소재 적합성 평가기관의 결과를 인정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함.
- 냉장고와 리튬이온전지 산업에서 미국과 일본의 기술수준과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감안할 경우, 향후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적·환경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2010년 현재 세계 리튬이온전지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은 약 35%로 1위를 차지함.¹⁰⁾
 - 냉장고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약 60%로 큰 우위를 점하고 있음.¹¹⁾

8) TBT 통보문, G/TBT/N/KOR/193

9) 기술표준원(2009. 6), 「리튬이온전지 현안 관련 대외답변 방안」.

10) 파이낸셜 뉴스(2010. 12. 20).

11) 경향신문(2011. 4. 21).

나.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 한국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을 정하고 2012년부터 발효를 예정함.¹²⁾
- 미국은 이러한 조치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고, 2010년 12월 한국은 4,500대 미만¹³⁾의 소규모제작사에 대해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 자동차의 연비·온실가스 배출기준 완화 허용 또한 향후 우리나라에 대해 경제적·환경적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과 EU에서도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 시 소규모 제작사에 대한 최소한의 시장 접근 보장을 위해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 자동차 기준규제 완화의 경우, 2009년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제작사들의 판매량 합계는 11,237대로 같은 해 국내 승용차 총 판매량의 0.9%에 불과함.
 - 또한 미국산 자동차의 판매저조 원인은 낮은 성능과 투박한 디자인 등 주로 상품성에 관한 것이므로 시장점유율에서 자동차 기준규제 완화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¹⁴⁾
 - 환경적 측면에서 제작사별 온실가스 기준의 19%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¹⁵⁾

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 한국은 2008년 제정된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품질 개선,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를 도입함.¹⁶⁾
- 동 제도에 따르면 유기가공식품을 판매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정한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기존의 외국 인증기관도 신규로 인증을 받아야 함.
- 미국은 동 규제 준수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고, 유기가공식품의 원료로 유전자재조합식품(GMO: Genetically

12) TBT 통보문, G/TBT/N/KOR/296.

13) 2009년 한국 내 판매량 기준.

14) 한국일보 설문조사자료(2010. 12. 5).

15) 환경부 설명자료(2010. 12. 5).

16) TBT 통보문, G/TBT/N/KOR/204.

Modified Organisms) 농산물, GMO 유래 원료 및 미생물제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은 자국 수출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또한 중복시험을 피하기 위해 외국 소재 인증기관에 대한 상호 동등성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함.
- 미국 외에도 EU,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스위스, 칠레가 동 사안에 대해 WTO/TBT 위원회에 특정무역협안을 제기함.
- 이에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동 제도에 대해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둬.

■ 동 제도의 적합성 평가시험 중복성 논란과 외국평가기관 인정 요구는 최근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인해 해결될 것으로 평가함.

- 최근(3. 11) 농림수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친환경농산물), 「식품산업진흥법」(유기가공식품)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친환경수산물)으로 분산 운용되고 있던 친환경 관련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친환경농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함.
- 본 개정안(제36조, 제37조)에서는 외국시험평가기관에 대한 동등성 인정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있어 미국 측 요구가 대체로 수용될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국내 유기가공식품 시장의 확장속도를 감안할 때 후속조치 수립에 신중한 접근을 견지해야 할 것임.

- 2008년 우리나라 유기가공식품 시장규모는 2,158억 원으로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유기가공식품에서 국산 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3.7%에 불과함.¹⁷⁾
- 따라서 관련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국가들이 미국 외에도 EU, 캐나다, 뉴질랜드 등 선진국 위주임을 감안하여, 향후 구체적 제도 설계·운용에 체계적인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임.

라.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 2008년 10월 식약청은 유전자재조합식품(GMO)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대폭 강화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 예고함.

- 이 개정안은 일부 품목에 한정되었던 유전자재조합 표시제도를 GMO 농산물을 사용한 모든 가공식품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미국은 GMO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와 자국수출기업의 비용증가를 예상해 이를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함.

17) 농민신문(2011. 2. 14).

- 유전자 재조합식품 표시제는 각국의 국민 정서에 따라 관리되어야 할 주권적 영역의 측면이 강하며, 관련 표시제에 대한 주요 도입국들의 제도변화와 대응논리를 참조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1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가 수입 승인한 LMO(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 포함 농산물은 21억 달러(849만 톤)였으며, 이는 2009년 대비 약 16.5% 증가한 수치임.
-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가 최근(2010. 12)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87% 이상이 LMO의 유통·표시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원하고 있으며, LMO 포함 식품에 대해 낮은 구매의사를 보이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EU,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전 세계 20여 개국이 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과학적 검증과 사회적 검증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음.¹⁸⁾
- 유전자 재조합 작물 재배면적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미가입국 6개국(미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우루과이, 호주, 칠레)은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표시제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마. 박막태양전지 모듈

- 한국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태양전지 모듈 등) 설비의 보급촉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동 제도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이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있는데, 박막태양전지판의 경우 실리콘계(A-Si)에 대한 인증만 실행하고 있음.
- 미국은 한국이 여러 종류의 박막태양전지판 중 실리콘계에 대해서만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국 기업 중 비실리콘계(CdTe, CIGS 등) 수출업체의 피해를 우려함.
- 이에 우리나라는 환경영향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라 비실리콘계 박막태양전지 모듈의 인증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제품 내부 또는 생산 과정에서 사용되는 카드뮴과 같은 유해물질로 인해 비실리콘계 박막태양전지 모듈을 인증하지 않고 있으나 2012년 6월 완료 예정인 연구 결과에 따라 환경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을 추진할 계획임.
- 또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은 강제가 아닌 임의(voluntary) 제도로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함.
- 그러나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 지원사업과 인증설비 관련 입찰 시 가산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에서는 제외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음.¹⁹⁾

18) 2011년 2월 기준으로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가입국은 159개국이며, 우리나라는 2008년 1월부터 「LMO법」을 국내에 시행 중임(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2010년도 국내외 주요 LMO 통계」).

- 동 인증제도에 관한 논란의 원인을 환경 외적 측면에서 살펴볼 경우, 갈등의 지속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신재생에너지산업의 경우 발전 초기단계의 특징인 저수요·고투자 필요성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연구개발 및 보급 확대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이거나 도입 추진 중인 대표적 보급 확대정책으로 발전차액제도(FIT)²⁰⁾와 공급의무제(RPS)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에 발전차액제도가 도입되었음.
 - 국내 박막태양전지판 시장수요는 발전차액제도에 의한 정부의 공적 수요로 주로 구성되어 있는 단계이나 이러한 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폐지할 계획임.
 - 지식경제부는 2011년 태양광 발전차액지원 적용 기준가격을 2010년 대비 14.54% 인하하기로 한 바 있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지원규모를 축소해 폐지할 계획임.
 - 국내 박막태양전지판에 대한 공적 수요 축소와 더불어 민간 수요 촉진을 위한 정책을 검토 중임.
 - 2012년부터는 기존 발전사업자들에게 일정량의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생산·공급하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2010년 우리나라 태양광산업 전체 매출액은 6조 5,241억 원으로 최근 4년간 연평균 400%가 넘는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수출비중이 70% 이상을 유지하는 대표적 수출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임.²¹⁾
 - 따라서 발전차액제도의 폐지와 우리나라 기업의 높은 시장경쟁력으로 인해 박막태양전지판 관련 인증제도에 대한 논란의 근거와 실익이 약화될 것임.

4.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와 관련된 TBT 현안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1) TBT 관련 대외 전담부서의 설립, 2) 선제적인 TBT 대응전략 마련, 3) 국내 기술규제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첫째, TBT 관련 특정무역현안 제기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TBT 관련 대외 전담부서가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 TBT 관련 대외 질의처(enquiry point)의 경우 관련 품목에 따라 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수산식품부로 나누어져 있음.²²⁾

19) 기술표준원(2010. 6. 17), 「2010년도 제2차 WTO/TBT 운영위원회」.

20) 발전차액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하여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지식경제부 장관 고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의 차액(발전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현재 주로 태양광에 집중되어 있음.

21) 태양광산업협회, 「2010년 태양광산업 실적 보고서」.

- 2011년도 「USTR TBT 보고서」에서 박막태양전지판 인증제도는 기술표준원,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농림수산 식품부, GMO 표시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담당하고 있음.
- 그러나 원활하지 않은 부서간 교류, 국제현안에 대한 통상지식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TBT 관련 각 부서의 의견을 취합하고 전체 국제통상 관계 속에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TBT 관련 대외전담부서가 필요함.
- 미국 상무부내 국립표준기술원(NIST)의 ‘국가표준인증정보센터(NCSCI)’, 중국의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AQSIQ) 등과 같이 주요 교역국들의 경우 TBT 관련 대외적 현안을 전담하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음.

■ 둘째, 현재와 같이 외국의 TBT에 대한 후속 조치 위주의 대응보다는 사전적 조사를 통한 선제적인 TBT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함.

- 이러한 선제적 TBT 대응전략은 1) 우리나라 관련 현안 외의 기술규제에 대한 분석, 2) TBT 통보 이전의 사전적 규제동향 파악, 3) WTO/TBT 위원회에 통보되지 않은 규제에 대한 파악이 있음.
- 첫째, 우리나라와 관련되지 않은 특정무역현안 또한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TBT 대응방식은 외국 TBT에 대해 관련 업계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후속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형식임.
- 모든 특정무역현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TBT 관련 조치들에 대한 전반적 동향 파악, 유사품목에 대한 대응논리의 개발, 추후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데 효과적인 자료가 될 것임.
 - 한편 WTO/TBT 위원회에 통보된 일부 기술규제의 경우 짧은 의견 제시기간을 부여하거나 이미 정책이 입안된 후 통보되는 경우도 있음.
- 한 예로 인도의 ‘타이어 ISI 마크 인증 규정’의 경우²²⁾ 사전정보 습득의 부재로 인해 대응시간이 부족하고, 이에 따른 수출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국내 타이어협회의 의견이 있었음.
- 따라서 신규 추진 중인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외교통상부 재외공관이나 KOTRA 해외 무역관의 인력 등을 활용하여 정책 입안 전 단계부터 미리 파악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아직까지 WTO/TBT 위원회에 통보되지 않은 각국의 표준이나 기술규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관찰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현황조사 및 국내 수출에 대한 영향 평가와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특정무역현안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술규제제도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 불필요한 규제의 존재, 규제의 고착화, 유사한 규제의 중복인증, 관계부처의 재량권 과다 등 국내규제제도 개선에 대한 업계의 의견이 있음.²⁴⁾
- 이러한 국내 기술규제제도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대기업의 경우 연평균 246억 원, 중소기업의 경우 19억 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22) WTO/TBT 위원회 보고서, G/TBT/ENQ/37.

23) TBT 통보문, G/TBT/N/IND/20.

2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설문조사(2009. 8).

- 또한 국내 기술규제제도의 비효율성은 국내 기업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역국에 대해서도 특정 무역현안 제기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음.
- o 특히 몇몇 기술규제 경우 관련 품목의 통상환경이나 국제표준 존재여부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입되고 있어 해당 교역국들이 보호주의 무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경우가 발생함.
- 따라서 필요한 기술규제 도입 시 국내업계의 의견뿐만 아니라 관련 WTO/TBT 협정문 내용이나 국제표준의 존재여부, 해외의 유사한 규제 존재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술규제 입안 업무 지침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신기술규제전략’²⁵⁾과 유사한 형태로 정부 주도로 국내 기술규제제도를 효율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의 선진시스템 도입을 위해 선진국과 적극적인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o 특히 높은 기술수준과 선진화된 제도를 갖춘 국가와의 MRA 체결은 현재 우리나라 기술규제의 체계적, 단계적 개선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할 수 있고 규제에 대한 국제적 추세를 즉각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KIEP**

25) 미국 백악관 발간자료(2011. 1. 18), *Fact Sheet: The President's Regulatory Strategy*.